(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3-0172)

'제35회 인쇄문화의 날' 계기 2023년도 인쇄문화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'제35회 인쇄문화의 날'을 기념하여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3. 5. 8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포상 훈격

- 훈·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
- ※ 포상 훈격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 후 확정 예정
- ※ 2022년 포상 규모(훈장 1매, 대통령표창 1매, 국무총리표창 1매, 장관표창 20매)

2. 추천대상자(선발 기준)

- 가. 인쇄 관련 원자재 및 인쇄기기 국산화에 기여한 자
- 나. 인쇄공정 개선, 기술혁신 등 인쇄기술 향상에 기여한 자
- 다. 인쇄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
- 라.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 인쇄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
- 마.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기업경영체계 확립에 기여한 자
- 바. 인쇄환경 개선 및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

3. 신청 자격

- 가. 인쇄분야 경영자 및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
- 나. 훈장은 15년 이상,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(2023. 6월말 기준)

4. 포상 제외대상

- 가. 재포상 금지 (*기준일: 포상추천일(6월))
 - o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 - 단체표창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 - *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 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 -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나. 포상 추천제한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ㅇ 형사처분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*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- *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- ○「상훈법」 제8조 및「정부표창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10조 및 같은 법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- 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화
- ·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- 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 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학
- 다만, 상기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(단체)
-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※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, 정부표창규정,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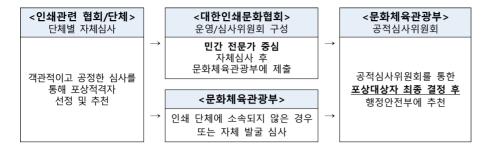
5. 후보자 추천 및 접수

- 추천자: 인쇄관련 단체(기관), 개인(본인 추천 포함) 등 제한 없음
- 추천자는 훈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추천
- 외국인 추천은 유관단체(기관) 추천에 한함
- *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추천
- 숨은 유공자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추천 가능
- 접수기간: 2023.5.8.(월)~5.30.(화), 23일간
- 제출서류: 추천서 1부, 공적조서 1부(공적요약서 포함), 정부포상 동의서 1부, 공적 증빙자료 1부
- 제출방법: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(hwp)로 작성하여 서류 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로 동시 제출
- 서식배부: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→알림·소식→알림)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(www.sanghun.go.kr), 인쇄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

ㅇ 접수처

- **문화체육관광부**: (우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(이메일: seulkeej@korea.kr)
- **(사)대한인쇄문화협회**: (우 04031)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길 12(이메일: printculture@hanmail.net)
 - ※ 인쇄관련 단체: 대한인쇄문화협회 등(단체 추천 시 인원 수 제한 없음)

6. 후보자 추천 절차



- **7. 수상자 발표**: 2023년 9월 중 개별통지
- 8. **시상일(예정)**: 2023년 9월 14일(목)

9. 기 타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(☎044-203-3247) 및 대한인쇄문화협회(☎02-335-5881)로 문의하시기 바람